



이 단계를 판매원 수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의거하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이하 '시크릿'이라 합니다)의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첩입니다.

## 회사소개

### SEACRET STORY

#### 베일 벗는 시크릿,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한 이스라엘 청년, 모티 & 아이작 밴 사바트 형제로부터 시크릿 스토리는 출발합니다.

밴 사바트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키오스크 사업에 도전합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사업가들로 구성된 그들의 사업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며 부의 공유를 실천하는 진정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밴 사바트 형제는 사업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해 인근에서 성장하여 누구보다도 사해의 신비한 생명력에 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사해미네랄 화장품을 개발하여 세계인들과 공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독특한 원료에 첨단 기술을 배합한 사해화장품 시크릿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소매판매로 세계 각지에서 제품력을 확인한 밴 사바트 형제는 시크릿을 통해 부의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업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 직접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사업에 매진합니다. 시크릿은 미국, 멕시코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2012년 한국지사를 설립하였고, 이어서 2013년에는 캐나다, 2014년에는 호주, 2015년에는 일본, 독일지사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시크릿은 세계 약 40개국 600여개의 전문매장을 통해서도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 SEACRET ORIGIN

#### 사해의 생명력 POWER OF DEAD SEA

5,000년 전부터 사해는 힐링과 뷰티의 원천으로 유명합니다. 세기의 미인 클레오파트라는 사해 미네랄에 매료되어 머드 및 소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헤롯왕 역시 인류 최초의 스킨을 사해연안에서 짓고 귀족들과 휴양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 아래 약 420미터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에서 발견되는 미네랄 성분은 수천년의 세월을 거쳐 대자연의 힘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사해에는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브롬, 칼륨, 철분 등을 포함한 필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자연과 과학의 만남 SCIENCE MEETS NATURE

시크릿은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대자연의 신비로운 생명력을 담은 사해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시크릿은 세계 각지에서 큰 인기와 명성을 얻어가며 세계 약 40개국 소비자 가 인정하는 막강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크릿은 바다, 페이스, 헤어케어 라인으로 60여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01 회사 소개
- 02 사업 안내
- 06 회원활동법규(윤리강령)
- 30 보상플랜
- 33 에이전트 준수사항
- 36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
- 39 과대, 과장 광고 금지 안내

## SEACRET CULTURE

### 사명 MISSION

우리의 사명은 독보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획 그리고 남다른 기업문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Wealthy Global Community)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핵심가치 CORE VALUES

- 01 세계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 02 제품을 생활화하여 스스로 제품의 홍보대사가 된다.
- 03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한다.
- 04 감사, 겸손,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 05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 06 애정과 존중으로 소통한다.
- 07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 08 행복하고 충성스러운 패밀리지성을 구축한다.
- 09 늘 단순하고 긍정적이며 즐겁게 생각한다.
- 10 함께 성취하고 서로 축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사업안내

### 에이전트 등록

#### 1. 에이전트 등록방법

- ABC(Agent Business Center), 홈페이지, 팩스 02-2222-2929, 메일(intokr@seacretdirect.com)
- 고객센터 : 02-2222-2900

#### 2. 구비서류

- 에이전트 등록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우대고객 등록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가능

### 주문

#### 1. 운영시간(고객지원부 콜센터)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은 휴무입니다.

#### 2. ABC(에이전트 비즈니스 센터) 방문 주문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 일요일, 휴일은 휴무입니다.
- 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미르모나코 지층 104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850
-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368 한기람코아1, 2층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50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301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90
- 부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5층 503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99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화로 16, 스마일 빌딩 3층 302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40
- 인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7, 신라빌딩 5층 502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890

### 3. 전화 주문(고객센터)

- 주문 및 상담 전화번호 : 02-2222-2900

### 4. 인터넷 주문

- [www.seacretdirect.kr](http://www.seacretdirect.kr) (24시간 운영 에이전트용 홈페이지)

### 오토십 프로그램

#### 1. 오토십 프로그램 소개

- 1) 홈페이지 마이오피스에서 오토십 주문을 선택하시면 지정된 주차부터 선택하신 제품에 대해 매 4주 단위로 자동 결제 및 자동 배송됩니다.
- 2) 4회차~12회차 오토십에는 제품가격의 (5%~7%) DC가 제공됩니다.(BV차감 없음)
- 3) 3, 6, 9, 12회차 오토십 배송 시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 4) 12회차 제품 배송완료 후 13회차에는 무료 'Active' 상태가 1회 부여됩니다.
- 5) 13회차 무료 'Active' 상태 1회 부여시점까지 제품변경 및 오토십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진행중인 오토십 상품으로 자동으로 연장되어 등록된 주소로 배송됩니다.
- 6) 매 회차마다 제품 변경이 가능하며, 배송지 및 결제정보 변경은 제품 발송 해당주 월요일 까지 가능합니다.
- 7) 오토십 상품 종류
  - **순환 오토십** : 매 회차마다 미리 지정된 제품이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자동결제 및 배송됩니다.
  - **일반 오토십** : SA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오토십 상품으로, 선택한 동일한 제품이 4주간격으로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자동결제 및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 8) 오토십 프로그램은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로 진행됩니다.
- 9) 오토십 미결제, 주문취소 및 반품시, 오토십이 해지 처리됩니다.
- 10) 유통강령에 위반에 대한 징계(자격정지, 직권해지)시 자동 해지됩니다

1) 오토십 신청주소 오류로 제품이 반송되어 계속된 부재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송입고일 기준 5일(영업일) 경과시 반송처리 되며, 오토십 역시 해지됩니다.

## 2. 신청방법

- 온라인 : 마이오피스에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그 외 ABC, 콜센터를 통한 신청, 변경, 해지는 불가합니다.

## 3. 오토십 프로그램 결제 및 배송

- 1) 오토십의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2) 오토십은 매 4주마다 반복되는 주문 형태로 주문이 생성될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화요일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며, 결제가 완료된 후 등록된 주소로 자동으로 배송됩니다.
  - 3) 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일 후 금요일에 재결제를 진행하며, 금요일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토십은 자동해지됩니다.
- ※ 화, 금요일이 비영업일 경우 익영업일에 결제됩니다.

##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의 방법으로 제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1.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문에 대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주문 시 사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해당 카드사의 결제절차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2. 계좌이체(가상계좌)

- 가상계좌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주문시 발급되며, 등록된 회원의 연락처로 SMS 발송됩니다.
- 가상계좌는 발급된 당일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당일 미입금시 당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다시 가상계좌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로 당일 입금하면 주문처리가 완료됩니다.

## 배송

모든 주문은 택배로 배송되며, ABC에서의 직접 픽업도 가능합니다.

### 1. 배송비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합계 구매액이 7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로 배송됩니다. 만일 합계 구매액이 7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송비 4,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무료로 배송된 제품에 대해 반품시에는 무료택배이 소멸되어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2. 배송시간

- 평일 오후 3시 이전 주문 : 평균 1일 ~ 2일 소요
- 평일 오후 3시 이후 주문 : 평균 2일 ~ 3일 소요
- 주말 주문 : 평균 2일 ~ 4일 소요

■ 오토십 주문 : 평균 1일 ~ 4일 소요

\* 상기의 택배 소요 기간은 택배회사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제품 수령 확인

-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면 품명과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배송확인증에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확인증에 서명날인 후 제품의 품명과 수량에 대한 책임은 주문자에게 있습니다.
- 제품수령 시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수령시 확인사항 안내' 인쇄물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반품 및 환불

### 1. 소비자 반품(우대고객 포함)

소비자의 구매불만에 대하여 제품 구매대금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판매한 에이전트의 책임입니다. 소매판매의 경우 소매영수증을 교부하여 이에 대하여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반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재화 공급이 늦어진 경우는 공급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입니다.

### 2. 에이전트 반품

에이전트가 재판매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반품하는 것으로 제품인도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제품공급 후 반품시까지 경과 기간에 따라 하기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개월 이내 : 재화대금의 0%
- 1개월 경과 ~ 2개월 이내 : 재화대금의 5%
- 2개월 경과 ~ 3개월 이내 : 재화대금의 7%

### 3. 반품 시 제한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의 경우 반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
    - \* 반품요청자의 귀책사유(비정상적인 반품접수, 연락두절, 부당한 요구, 입금지연 등)에 의해 접수된 반품건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트러블 반품시 증빙사진, 진료확인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사은품이 포함된 재화 등에 대한 청약철회시 사은품은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 불가시 해당 제품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 \* 본인 구매 제품 이외의 반품은 불가하며 본인에게 출고된 제품의 바코드와 일치해야 반품이 가능합니다.

#### 4. 환불

반품접수 기준일은 청약철회에 대한 상담(기간경과에 따른 공제비용, 배송비, 반품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송인금액등에 대한 결제완료)후 재화를 반환 받은 날이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최초 구매방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승인이 취소 처리되고, 가상계좌로 입금한 경우 등록된 은행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단, 공제금액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확인 후 카드 승인 취소 또는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할인 및 불용업이 적용된 팩 제품의 부분 반품시 할인 또는 불용업의 혜택은 소멸되며, 미 입고된 제품은 회원 가격으로 재결제 후 원 주문은 전체 취소됩니다.

#### 5. 반품절차

- 1) 회원 본인이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신청을 합니다.  
- 전화 : 02-2222-2900(안내 멘트 후 4번)
- 2) 반품신청시 회원정보, 주문번호 확인 후 제품회수 정보(회수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3) 요청한 회수주소로 3~4일내 택배사원(롯데택배)이 방문하여 회수합니다.
- 4) 회수된 제품이 입고후 재결제 금액이 없을 경우 3영업일 이내 반품 처리되며, 반품 처리 완료 내역이 SMS로 발송됩니다.
- 5) 기간 경과에 따른 공제 비용, 초기 배송비, 반품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결제 금액 발생 시 반품 담당자가 별도 연락하며, 발생한 금액은 재결제 후 원 승인내역은 전체 취소됩니다.  
(오토신 제품을 반품 할 경우, 오토신은 자동 해지됨)

### 회원활동법규(윤리강령)

#### SECTION 1

##### 개요

##### 1.1 계약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회원 활동법규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시크릿' 또는 '당사')와 적법하게 승인된 시크릿 AGENT(이하 SA)간의 SA등록 및 사업활동시 요구되는 여러 구체적인 방침 및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SA 등록신청서와 함께 SA 자격 계약의 동의조건으로 인정된다.

SA는 시크릿 SA 회원 활동법규 및 각종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시크릿 제품과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SA는 시크릿이 필요에 따라 규정 및 정책을 수정할 경우, 변경된 내용이 웹사이트등을 통해 SA에게 통보된 시행일로부터 즉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2 계약내용의 변경

시크릿은 고유권한으로 계약 내용 및 상품 가격등을 개정할 권리가 있다. SA는 시크릿이 개정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에 따른 것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정, 개정된 모

든 규정, 양식, 정보는 공지시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 또는 개정될 내용은 시크릿의 공식 웹사이트(홈페이지, 마이오피스), 전자메일, 시크릿의 정기 간행물, 우편물 중 선택되어 전달될 수 있으며 SA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다룬라인 SA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 1.3 관련법령 숙지 및 준수

SA는 시크릿의 회원 활동법규 및 사업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 및 법정분쟁에 대해 시크릿은 SA에 대해 조사 및 징계의 권한이 있다.

#### SECTION 2

##### SA등록

##### 2.1 신청

가. 시크릿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SA를 후원할 수 있는 SA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승인된 SA의 후원을 받아 시크릿에서 제공하는 'SA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후 시크릿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SA 등록신청서'에는 등록 당사자 본인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SA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크릿에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관련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가입자는 가입 승인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분사 및 ABC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명의 SA는 단지 하나의 시크릿 사업만을 운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다. 민원발생 우려가 있거나 거짓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신청한 경우 시크릿 고유 재량으로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작권해지 할 수 있다.

##### 2.2 SA 등록 자격

가. 적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우대고객 포함)  
나. 대한민국의 합법적 거주비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 이민), D8(외국인투자) D9(무역경영)를 가진자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SA로 등록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공무원, 교원, 법인, 단체, 다단계판매업자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②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기타 자신의 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기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 ③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도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람
- ④ 복역 중이거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사람
-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실형의 집행중로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시크릿 SA 회원 활동법규를 위반하여 SA 자격이 해지된 사람으로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자

- ⑦ 기존 SA로 비활동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사람
- ⑧ 차명(배우자, 자녀, 친지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⑨ 합법적 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인 등록시 온라인 등록은 불가하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체류만료일 4개월 이상일 경우만 등록가능)하여야 하며 체류기간만료일이 4개월 미만인 경우 등록불가하다. 단 체류기간 만료이전에 연장한 신분증 사본 제출시 등록가능하다. 체류기간 만료이전 연장시 당사에 연락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미갱신시 SA자격은 해지된다.

### 2.3 온라인을 통한 등록

가. 온라인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 SA를 후원하는 경우, 그 신규 등록자가 등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후원인이 도와줄 수 있다. 신규 등록자는 온라인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시크릿의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시크릿의 보살플랜에 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SA가 시크릿에 제공하는 모든 거래내용은 그 거래에 관련된 본인에 의해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적법한 대리권 없이 특정 SA가 다른 SA,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여하의 자료 제출 관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 2.4 법정거주지

SA는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SA등록을 할 수 있으며 거주국이 아닌 다른곳에 접수된 'SA 등록신청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크릿의 요구시 SA는 기존 거주 국가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국제 후원을 위해 타 국가에서 사업등록시 관련 국가의 법률 및 회원활동법규를 준수하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SA가 등록된 국가를 타국가로 변경시, 변경전 등록된 국가의 SA 활동법규 집계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 2.5 부부사업자

가. 법적 부부는 하나의 SA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부부가 모두 SA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하나의 SA 코드로 등록해야 하며, 부사업자도 2.2 SA등록자격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하다.(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지정) 부부는 각각의 SA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서로를 후원할 수 없다. 만약 위반시 각각의 코드에 대해 징계조치될 수 있다.

나. 배우자가 이미 SA로 등록된 경우, SA 등록을 희망하는 미등록 배우자는 부사업자 추가를 신청하여 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가입신청시 기준으로 개별코드를 가지고 있던 SA가 법적 부부가 될 경우 각각의 코드는 인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코드로 활동할 경우 부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2.5.1 주사업자, 부사업자

가. 부부사업자 중 주사업자는 시크릿으로부터 각종 정보 및 통지, 후원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상호 합의하여 시크릿에 '주/부사업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부사업자 변경은 가능하다. 주/부사업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횡수 및 허용여부는 시크릿의 판단에 의한다.

나. 부사업자가 탈퇴 후 재등록 할 경우 6개월후에 할 수 있다.

### 2.5.2 부부사업자의 책임

회원 활동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동 SA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미등록 배우자가 시크릿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SA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미 등록된 배우자가 본 활동법규 및 시크릿의 각종 정책을 위반할 경우 등록된 SA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사업자가 탈퇴한 후 당사의 회원활동법규 위반시 주사업자에게 징계할 수 있다.

### 2.5.3 시크릿 사업의 분리

가. 부부 공동의 SA가 이혼하는 경우, 누가 SA 지위를 유지 할 것인지 시크릿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사업자가 해당 SA 지위를 갖는다.

나. 부부 중 한명이 권리를 포기하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 배우자의 동의하에 SA지위를 갖는다.

다. 이혼절차 중 일방의 권리포기가 없다면 최종 이혼시까지의 시크릿이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이혼소송 이전에 존재했던 원래 상태에 따라 지급된다.

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는 부부의 하위사업자 조직은 양분되지 않는다. 시크릿은 수당이나 보너스를 이혼하는 두 SA에게 나누어 지급하지 않는다.

마. 이혼 절차 중인 당사자가 SA지위 및 수당의 양도에 대한 분쟁을 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SA의 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바. 이혼 후 배우자 한 쪽이 원래 시크릿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면, 즉시 자유롭게 신규SA로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시크릿은 SA가 이혼시 해당 SA의 수당과는 별도로 직급(지위)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6 SA 등록신청 승인

SA 등록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시크릿의 권한이며, 시크릿은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시크릿은 SA 등록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SA 번호와 SA 등록증 및 SA 수첩을 발급하며, 시크릿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신청자는 SA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

### 2.7 SA 정보 변경

모든 SA는 회원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 당시 기재한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사 관련부서로 통보 또는 (본인이 직접 마이오피스) 수정하여야 한다. 당사에 등록된 회원정보로 송부된 정보(우선, SMS, 이메일, 우편물 등)는 회원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행 및 수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SA에게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8 추천인/후원인

가. 동일한 신규 SA에 대해 두 명의 SA가 서로 추천인/후원인이라고 주장할 때, 시크릿은 정상적인 접수건에 한해 본사에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추천인/후원인 지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추천인/후원인을 정하여

- 신청일로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에 알려야 한다. 단, 1회에 한한다.
- 다. 시크릿은 등록과정에서의 업무실수, 상위 추천인/후원인의 탈퇴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크릿 고유권한으로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 라. 추천인/후원인 변경은 당사의 전적인 고유권한으로, 변경신청의 거부나 결정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SA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할 수 없다.
- 마. 당사가 판단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 변경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A는 어떠한 주장 및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2.9 재등록

- 가. SA는 비활동 기간(마지막 주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직권해지 된 이후 새로운 후원인 하위로 재등록 할 수 있다. 6개월의 비활동 기간이 지난 후, 재가입한 SA는 새로운 후원인 아래 다시 등록할 수 있으나, 예전 본인의 하위사업자들은 원래의 후원인 라인에 남게 된다.
- 나. 6개월 이후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인 원하는 다른 후원인로의 등록이 가능하다.
- 다. 시크릿은 신규 SA의 어떠한 신청 및 갱신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이에 대해 설명할 이유는 없다. 특히 당사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자가 재등록 요청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시크릿과 상황에 대하여 협의 후 가입이 가능하다.
- 라. 징계규정에 의해 직권해지된 회원이 재등록 신청시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 마. 비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자라 하더라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 내부 협의에 의해 진행 할 수 있다.

## 2.10 승계

- 가. SA는 법률상 상속과 주/부사업자 전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 전체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전체 혹은 일부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양도·양수)할 수 없다.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법적 문서가 시크릿에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SA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SA 자격을 승계할 한 명의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언 혹은 그 외 동일한 효력이 있는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 나. 유언에 의한 시크릿 사업의 양도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유언 집행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시크릿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망확인서 (2) 공증된 유언장 또는 유언집행자의 선임에 대한 행정문서 (3) 승인된 유언집행자가 누구에게 사업과 소득이 양도되어야 하는지 시크릿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서
- 다. 시크릿에 상속신청을 하는 경우 사망시점기준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크릿은 사망한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 상속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크릿은 서류심사를 하게 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승계시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된다.
- 마. 시크릿은 판매원의 지위에 대한 상속인이 정하여 질 때까지 판매원의 권리의무를 정지하고 시크릿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바. 상속인은 회원활동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수당 수령의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 시 변제의 의무도 있다.

- 사. 상속인은 판매원 지위의 상속을 신청하는 시점에 판매원 등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회원이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 회원 지위를 탈퇴하고 상속되는 회원번호로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향후 기존 회원의 지위에 따르는 어떠한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아. 시크릿은 신청 당시 상속인이 관련 법령 및 회원활동법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자. 판매원 지위의 상속인은 단 1명만 허용되며, 법적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나머지 법적 상속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차. SA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목적으로 시크릿을 그만두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부간의 주사업자를 변경하는 사항 확인 시, 시크릿은 양도·양수 이전의 상태로 강제로 복귀시킬 수 있다. 또한 법률 위반과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 카. 승계시 직급(지위)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친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가.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수단, 회원관리, 개인식별과 타인의 부정이용방지, 불만 처리 및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홍보등에 사용된다.
- 나. 시크릿은 SA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회원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이용가능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이용한다.
- 다. 회원 가입시 SA의 동의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미국 시크릿다이렉트 본사 및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보관된다.
- 라. 시크릿은 SA개인정보 등에 대해 SA가 사전에 동의한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 요구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에 공개 이전할 수 있다.
-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되어 있으며 SA는 이 규정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2.12 과세목적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제출 의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목적을 위해, 후원수당이 발생한 SA는 주민등록번호를 시크릿에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출로 인해 세금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시크릿은 해당 SA의 후원수당을 지급보류할 수 있다.

## 2.13 독립계약자 신분

SA는 독립계약자 신분이며 시크릿과 노사관계, 대리점, 동업 혹은 합작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SA는 본 회원 활동법규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영업에 대한 목표, 시간 및 방법을 스스로 책정해야 한다.

SA는 시크릿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당 소득 또는 그 외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시크릿은 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SA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SECTION 3 주문 및 수당

### 3.1 주문

SA는 시크릿의 주문시스템(온라인 몰, ABC 등)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상품의 최소 주문량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배송지역 및 주문한 상품의 수량에 따라 배송비가 달리 부과될 수 있다.

### 3.2 과도한 재고 보유 금지

SA는 본인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되며 다른 SA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치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보너스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구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보너스를 위한 구매는 최종소비자의 실제 제품구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승급, 인센티브, 포상, 수당 혹은 보너스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하한 방법 혹은 계획 및 보너스 수령후의 악의적 반품등을 포함한다. 여하의 프로모션이 오용되었거나 혹은 사기성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시크릿이 고위권하여 판단하게 되면, 시크릿은 수당의 박탈, 반환, 징계, 계약해지, 또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3.3 부정한 주문행위

SA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문할 수 없으며 허락되지 않은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하여서는 안된다.

### 3.4 신청서 혹은 주문서류의 보유

SA는 새로운 신청자의 등록 및 제품 구매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SA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그리고 제품주문서는 신규 SA의 서명 혹은 고객의 주문이 있었던 시점에서 시크릿에 제출되어야 한다.

### 3.5 오토십 프로그램

- 가. 오토십 프로그램은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로 등록되는 것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시크릿 홈페이지 마이오피스를 통해 변경 및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 나. 13회차 무료 'Active' 상태 1회부터 시작까지 제품변경 및 오토십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계속적인 오토십 프로그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 다. 오토십 미결제, 주문취소 및 반품시, 오토십이 해지 처리되며, 해지 처리된 오토십은 원상복구 조치 할 수 없으며 만약 재신청시 1회부터 다시 시작된다.
- 라. 회원 활동법규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직권해지를 받은 경우 오토십은 자동 해지 된다.
- 마. 오토십 신청주소 오류로 제품이 반송되고 계속된 부재등으로 주문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송입고일 기준 5일(영업일) 경과 시 반품처리되며 오토십은 해지된다.

### 3.6 제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시크릿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본래의 포장과 구성 상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한다. SA는 시크릿으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제품

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달리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

### 3.7 재판매 금지

SA는 시크릿이 공급하는 제품을 시크릿의 마케팅 플랜이나 시크릿의 판매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판매 및 공급 할 수 없다. 시크릿 제품은 반드시 시크릿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SA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SA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시크릿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 3.8 등록된 국가 외의 판매금지

SA는 본인이 등록된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을 등록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등록 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입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입된 상품을 등록된 국가에서 판매할 수 없다.

### 3.9 제품의 교환 및 반품

- 가. SA는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면 동봉된 "거래명세서", "제품수령서 확인사항 안내"를 통해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 나. 제품 수령시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센터(02-2222-2900)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다. 소비자에 대한 14일 반품 정책(우대고객)
  - 소비자(우대고객)는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상제품에 한하여 반품할 수 있다. 시크릿은 반품요청과 함께 반품을 원하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된다. 자세한 반품 절차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한다.
- 라. 소비자의 SA를 통한 반품
  - 소비자(우대고객)로부터 반품을 요청받은 SA는 해당 제품을 시크릿에 통지하고 반품 할 책임이 있다. 14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마. SA의 반품
  - SA가 제품을 구매하지 3개월 이내에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구매했던 제품 중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에 대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다. 시크릿은 방문판매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26조에 근거하여 제공된 아래의 지침에 의거하여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반품시점	공제율
제품의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0%
1개월~2개월 사이	5%
2개월~3개월 사이	7%
3개월 이후 : 반품 허용되지 않음	반품 허용되지 않음

### 3.10 수당 및 보너스 자격요건

수당 및 보너스 수령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살플랜상의 자격요건을 달성하고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달성과 준수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오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시크릿은 SA에 대해 수당의 박탈, 징계, 계약해지, 또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3.10.1 후원수당의 산정

- 가. 후원수당은 SA 매출실적과 해당 SA의 하위 사업자 조직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SA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주차별 요구사항 등을 충족시킴으로써 후원수당을 지급 받게 되며 시크릿은 SA에게 구체적인 소득, 성공 또는 특정 직급 달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는다.
- 나. SA의 수입, 이윤, 혹은 성공은 상품 혹은 용역의 판매와 해당 SA의 하위 사업자 조직 내 다른 SA의 상품 혹은 용역의 판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SA는 SA 개인적 재정 책임하에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 다. 차명가입등 편법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등이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로소득을 취득할 시 시크릿은 해당 SA에 대해 징계처리를 할 수 있다.
- 라. 연간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기준 초과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시크릿은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10.2 보상 플랜의 약용

- 가. 보상 플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SA는 보상플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인증 번호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과다한 상품을 구매, 재고로 보유하거나 보상플랜의 취지나 목적, 조건 등에 반하여 보상플랜을 약용하여서는 안된다.
- 나. 각 그룹이나 개인이 판매 촉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프로모션은 시행 전에 시크릿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받지 않고 시행된 프로모션에 대해 시크릿은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심의받지 않은 프로모션을 시크릿이 인지하게 되어 진행을 불허할 경우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시크릿과 무관하며 책임지지 않는다.
- 다. 심의 요청한 프로모션에 대해 진행불가 통보시 그 이유에 대해 시크릿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 3.11 반품에 따른 보너스 및 수당의 조정

- 가. SA는 실제 판매된 제품 및 서비스에 근거하여 보너스와 수당을 받는다. 판매된 제품이 시크릿에 반품된 경우, 해당 제품 판매 및 서비스에 기인하여 발생했던 보너스 및 수당은 반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해당주에 적용되어, 그 반품된 제품의 판매에 대해 보너스와 수당을 받았던 상위 SA들로부터 해당 수당이 환수될 때까지 매 수당지급 기간에 지속적으로 공제된다.
- 나. 본인 및 하위 SA가 판매한 상품이 반품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해 본인 SA가 지급 받은 후원수당(프로모션 및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는 채무를 진 경우 시크릿은 당해 SA에게 지급될 수당 또는 지급될 제 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지급될 수당 또는 향후 받게 될 수당이 없다고 시크릿에서 판단 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를 시행한다. 또한 일정기간 수당의 미발생 또는 실질적 사업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즉시 환수할 사유 발생시 (3.10조)에도 환수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 다. 미활동 SA, 탈퇴요청 SA, 탈퇴 또는 직권해지된 SA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 및 시크릿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채권을 최

우선적으로 회수한다.

- 라. 활동중인 SA에 대해서도 지급될 후원수당에서의 공제와 더불어 즉각적인 환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3.12 정보 확인 및 정정업무

- 가. SA가 수당, 보너스,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 혹은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SA는 그렇게 주장하는 착오 혹은 문제의 사례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크릿에 통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시크릿에 보고되지 않은 여하의 착오, 누락 혹은 문제에 대해서 시크릿은 책임이 없다.
- 나. 시크릿이 보상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SA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추후 발생할 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SECTION 4 마케팅 활동

### 4.1 허위 과대 과장광고 금지

- 가. SA는 시크릿,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크릿의 사업기회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 그리고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비윤리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크릿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업기회를 홍보하기 위해 SA는 반드시 시크릿이 제작한 영업관련 도구 및 지원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SA는 시크릿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간행물, 광고, 영업관련 물품, 홍보 자료, 혹은 인터넷 웹 페이지 등을 제작해서는 안된다.
- 나. SA는 제품을 설명할 때 시크릿에서 승인 받은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래의 예시를 포함하여 확장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 어떠한 주장이나 언급도 할 수 없다.
  - ① 질병의 예방 및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약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4.2 불특정인 대상 광고 금지

- 가. SA는 시크릿 사업, 제품 및 보상 & 마케팅 플랜과 관련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인쇄매체, 전화, 문자 메시지(SMS, MMS 등), SNS, 우편 및 컴퓨터 통신망(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로 대량 배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홍보,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나. 시크릿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나 특정 SA 또는 소속된 그룹을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행위는 일체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 후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SA는 시크릿, 상품, 보상플랜 또는 SA와 연관된 제3자 비디오, 오디오 등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SA 혹은 제3자가 시크릿, 시크

릿의 임직원, SA의 이벤트, 미팅, 교육, 세미나 또는 비즈니스 관련 발표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해서는 안되며, 해당 촬영물 등은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크릿에 의해 제작되고, 시크릿에서 게시를 허용한 홍보수단이거나 사전에 승인한 비디오, 오디오 프레젠테이션 등의 미디어 콘텐츠는 게시 할 수 있다.

#### 4.3 상업적 매장

가. 시크릿의 제품은 시크릿이 인정한(사전 승인을 받은)곳에서만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다. 그러한 시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SA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사전에 그 잠재고객에게 제품이나 사업기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크릿의 제품은 동일한 장소에서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설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나. SA는 행사장, 시장, 차량, 장터, 노점 및 타 영업시설 (시크릿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시설)등에서 시크릿 제품 또는 판매보조물품이 판매되거나 전시,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 또한 시크릿이 인정한 시설(사전승인을 받은)이라 할지라도 시크릿이 승인하지 않은 서비스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 4.4 상표, 상품명 및 저작권의 소유권 및 사용제한

가. 시크릿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시크릿이 사용하는 상표, 제품명, 기장, 로고(약호),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전적으로 시크릿에 있다. 따라서 SA는 시크릿이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크릿 및 시크릿의 관계사가 사용하는 상표, 로고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시크릿이 발행 및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시크릿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발행할 수 없다.

다. 어느 누구도 사전승인 없이는 시크릿 시크릿명, 로고 또는 제품명이나 상표가 표기된 품목을 시크릿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생산하거나 조달해서는 안된다. (판매보조물품 및 각종 홍보물등)

라. SA는 SEACRET 이라는 표현을 사업체 또는 사업명의 일부로라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마. 시크릿의 사전승인 없이는 SA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시크릿 명칭이나 로고를 부착할 수 없으며 또한 시크릿 또는 시크릿 소유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부 등에 등록할 수 없다. 시크릿이 허가하지 않은 곳의 전면, 기타 행인이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 또는 회원 획득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된다.

바. 시크릿은 허락하지 않은 상표, 로고, 기타 지식 재산권 및 서비스 등을 사용한 SA에게 회원징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크릿의 조치에 SA는 즉시 응해야 하며 시크릿이 입은 손실, 손해 및 기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4.5 상표, 상품명 등 저작권의 소유권 및 사용허가

가. SA는 SA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시크릿이 인정하고 공급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나. SA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제작하는 홍보물에 시크릿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시크릿의 허가로 복제되었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단 부분발체 및 임의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SA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시크릿이 시크릿 상표의 소유권자임을 언제나 표기한다.
- ② 상표는 등록된 대로만 사용하며 상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시크릿이 수시로 발행하는 규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 4.6 판매보조물품

가. SA는 시크릿이 서면 승인하지 않은 일체의 판매보조물품을 제작,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다. 서면 승인은 시크릿이 승인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이라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을때까지만 유효하다.

나. SA는 책자, 인쇄물, 음성 또는 영상제작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상품 보조용품,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전자 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매보조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제작한 판매보조물품의 홍보 또는 유통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다. SA는 시크릿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모임에서 행한 연설 또는 설명회 내용을 시크릿의 사전승인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 또는 촬영할 수 없으며, 시크릿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를 판매하거나 승인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SA가 제작한 판매보조물품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시크릿 사업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시크릿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크릿은 해당 SA에게 그와 같은 판매보조물품의 제작,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해당 SA는 시크릿의 중지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며, 그와 같은 자료의 제작, 유통 및 판매로 인하여 시크릿이 입은 손실, 손해 및 기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SA는 시크릿의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명칭은 시크릿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하며 당시의 임직원, 대리인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예: 본부장, ABC 센터장, oo지역 센터장 등)

#### 4.7 인터넷 비즈니스 규정

SA는 시크릿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SMS, MMS)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일체(이하 '웹사이트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시크릿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 및 전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SA가 시크릿 사업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등을 구축 및 운영할 경우 반드시 시크릿에 "SA 웹사이트 등록신청서"를 제출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크릿이 인정하는 컨텐트 제외) SA의 웹사이트는 소속 회원간의 사업 및 상호 의사소통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승인 받지 않은 웹사이트를 통한 소평물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오픈 마켓에 시크릿의 상호, 시크릿의 제품 및 판매보조물 등 어떠한 형태로도 판매해서는 안된다. 미승인사이트는 과대광고나 허위사실 등이 불특정다수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반쯤 등 방문판매법규 규정을 준수하기 어

렵기 때문에 금지한다.

- 나. SA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접수는 불가하며 시크릿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웹사이트의 명칭, 이메일 주소 및 사용자명, 상품명, 창업자의 이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시크릿, SEACRET DIRECT, 시크릿다이렉트 등) 또한 승인된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홈페이지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시크릿과는 무관한 시크릿에이전트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 다. 웹사이트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SA는 웹사이트를 시크릿보다 우선하여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웹사이트 등 록신청시 제출한 내용에 변경 발생시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고지한 내용중 시크릿이 변경사항을 고지하면 공지 이후 즉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 라. 시크릿 마케팅&보상플랜, 수입, 사업 기회, 제품등을 설명할 경우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크릿 이외의 다른 사업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 또는 홍보할 수 없다.
- 마.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온라인 판매 사이트, 온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커머스 등 시크릿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 운영사이트, 또는 상업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시크릿 제품 및 판매보조물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바. 웹사이트 등에 자신 및 타인의 마이오피스 계정 정보 및 수단내역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사. 웹사이트에서 시크릿의 제품과 사업기회 등을 광고함에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회원활동규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등 대한민국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아. 치료나 의학적 효능의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당시의 제품가격(회원가, 소비자가 등)을 허위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 SECTION 5 후원 활동

### 5.1 후원인의 책임

- 가. SA는 허위 SA가 시크릿 회원 활동법규 및 마케팅&보상 플랜에 따라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후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SA는 자신의 허위사업자 조직에 있는 SA들이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혹은 여타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허위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상위직급자의 교육 소홀의 책임이 있으면 징계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 다. 시크릿이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SA가 책임을 진다.
- 라. 일정 직급이상의 SA는 판매·제품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를 신규 SA에게 전달·교육 할 의무가 있다.

### 5.2 지속적인 후원에 대한 책임

- 가. SA는 자신의 사업적 성취 정도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기존고객을 서비스하고 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여 시크릿의 서비스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후원수당만을 수령한다고 시크릿이 판단시 SA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나. 후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서면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시크릿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사실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3 교육이수의 의무

SA는 각 직급별로 시크릿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크릿이 책임지지 않는다.

### 5.4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주장

SA는 수입이나 잠재적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나 기타 허위사실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수입 보장 또는 이러한 종류의 기대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후원수당 명세서의 원본이나 사본 이와 유사한 증명을 공개, 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 5.5 성장 가능성에 대한 주장

시크릿이 SA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보상플랜의 변경 또는 특정 국가, 지역이 시크릿 사업 지역에 추가될 것 이라는 등의 암시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 5.6 유인행위 금지

- 가. SA는 본 계약기간 중 다른 직접판매, 단단계 사업체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시크릿의 다른 SA나 고객을 다른 사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리쿠르팅 할 수 없다. 또한 사업권유나 판매방식등이 단단계와 유사한 업체의 경우에 참여하거나 유인할 수 없다. 이는 본인의 명의 뿐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등록 및 활동 전부를 포함한다.
- 나. SA는 다른 직접 판매 시크릿을 위해 시크릿의 타 SA 유인을 시도하거나 시크릿의 기밀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시크릿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피해에 동의한다. 이에 상기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시크릿은 사전 통보 없이 자격제한 이상의 조치를 통해 허용되지 않은 기밀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등 기타 법적 구제수단에 추가될 수 있다.

### 5.7 경쟁사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

SA는 시크릿 이외의 어떠한 경쟁 프로그램,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크릿의 홍보자료, 영업자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여타의 타사 홍보 자료, 영업자료, 제품 혹은 서비스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 전시해서는 안된다.

### 5.8 라인변경 금지(추천인 포함)

가. SA는 다른 SA로 하여금 추천인을 변경토록 권유, 유도, 혹은 방조할 수 없다. 다른

후원인 라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SA를 유인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기존의 판매조직을 해체시키고 다른 후원인 하위에 재등록을 하도록 금전적 혹은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나. 시크릿이 부적절한 라인변경이라 판단할 경우 명시된 절차에 더해 시크릿은 규정을 위반한 SA에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라인변경을 조장, 방조한 SA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SA는 부적절한 라인변경이 시크릿의 판매조직에 위해를 가하며, 나아가 시크릿에 손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위반 사항 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시크릿이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5.9 시크릿의 사업기회 및 상품 등을 이용한 별도의 영리활동 금지

SA는 시크릿의 사업기회, 상품,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별도의 영리활동이라 함은 ①가맹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②프랜차이즈를 운영 참가하는 경우 ③시크릿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 보조용품 등의 제작·배포 및 판매 등의 영리 활동 ④본 방침 및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은 SA의 모든 경제적 이익활동을 말한다. 시크릿의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제적 이익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크릿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5.10 마이오피스

가. 시크릿은 SA를 위하여 온라인 마이오피스를 제공한다. SA는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회원활동 관련된 모든 정보, SA공지사항, 수당관리 및 제품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 시크릿은 적절한 사유에 따라 특정 SA의 마이오피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마이오피스는 시크릿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이오피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시크릿이 권한을 가지며, SA는 자신의 계정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SA는 자신의 명의 혹은 어떤 타인, 동업자, 협회, 시크릿 혹은 그 외 주체를 대신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① 하위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동보고 내용을 제3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 ② 자신의 웹사이트 회원공간에 대한 비밀번호 혹은 회원번호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 ③ 해당 정보를 자신의 시크릿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 이외의 여타 목적 혹은 시크릿과의 경쟁을 위해 사용하는 것
- ④ 여하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크릿의 SA나 고객을 리쿠르팅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혹은 그들의 사업적 관계에 변동을 주기 위해 SA나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유혹하려는 어떠한 시도 행위(수당 공개 등)

### 5.11 자격 심사

SA가 시크릿 마케팅&보살핌, 상수, 승계, 주/부사업자 변경, 국적변경등에 따라 직급, 지위,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시크릿은 그러한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시크릿에 있다.

### 5.12 국제 후원

가. 어떤 SA도 시크릿의 제품, 시크릿에 관련된 강행법, 판매 자료 혹은 홍보자료를 한 국가에서 그 외의 국가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작,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나. 국제 후원을 원하는 SA는 시크릿이 정식으로 사업을 등록한 국가에 한해서 가능하며 해당 국가에서 공표된 회원 활동법규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강령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본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당 SA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다. 전체계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SA는 승인된 국가에서 회원활동을 할 수 있다. 아직 정식으로 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참석자수가 5명을 초과하는 세미나 개최, 주관,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라. 시크릿은 특정 국가에서 SA의 사전 마케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 5.13 SA의 자율성

SA 등록은 철저히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SA로 등록시키거나 정보변경, 또는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SA는 시크릿 및 시크릿 관계사, 또는 다른 SA와 어떠한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 SA에 대해서 일정수의 SA 후원이나 일정량의 제품 구매 또는 재고 보유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사업설명회 등의 행사 참여는 전적으로 SA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5.14 경제적 이득에 대한 보장 금지

노력이나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노력 없는 소득이 있을 수 없으며 확정적 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SA가 단지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행위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소득 또는 후원수당은 시크릿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일정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만 실현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시크릿 제품 또는 사업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보장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 5.15 6개월 비활동 규정

2.9 마에 해당하지 않는 비활동 규정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라인을 이전한 SA는 직권해지, 원라인 당사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예전에 SA로 등록한 경험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탈퇴로 인하여 SA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최종 구매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시 SA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비활동 기간에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름으로 차명등록된 SA 활동에 참여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 SECTION 6 사업 윤리

### 6.1 비방금지

SA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도 시크릿을 포함하여, 타인이나 그들의 상품 또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비방하는 비교, 광고, 설명 또는 진술을 하는 안된다.

### 6.2 부당한 협박·강요·희롱 금지

SA는 직급을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른 SA, 시크릿의 임직원 및 고객 등에게 어떠한 종류의 협박·강요·희롱도 금지된다. 특히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거나 언론사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안되며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해 차별적 요구는 철저히 금지된다.

### 6.3 시크릿 관계자 접촉금지

시크릿의 거래처, 공급자, 고문, 컨설턴트 등과 시크릿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 6.4 시크릿을 대표하는 권한 없는 행위

가. SA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기와 같은 시크릿을 대표·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① 시크릿 이름, 상표, 상호 또는 상품의 등록 및 보유
- ② 시크릿의 이름과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URL의 등록
- ③ 시크릿의 상품 또는 사업 모델에 대한 상품등록 또는 승인, 인증 등
- ④ 시크릿을 대표한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 정부와의 접촉 등
- ⑤ 시크릿의 전화번호나 주소, 직함등을 영함이나 개인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위 등
- ⑥ 기타, 시크릿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나. SA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시크릿을 대표, 대리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시크릿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고, 시크릿을 면책 시키며, 시크릿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담한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시크릿에 배상해야 한다. SA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본 조 관련 비용에 대한 상환 없이, 본 조를 위반하여 등록한 시크릿의 이름, 상호, 상표, 물건 또는 URL 등의 권리사항을 시크릿에 즉각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 SA는 SA의 대출 서류, 정부 양식,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등 기타 어떠한 서류에도 시크릿을 SA의 고용주 명의로 기재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 6.5 시크릿 명성 유지

SA는 본 회원 활동법규이외에도 대한민국 법등을 위반하여 수감되는 등 시크릿이나 SA의 명성 또는 비즈니스에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시크릿은 어떤 행동들이 불리한 것에 해당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징계절차에 의해 SA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SECTION 7 계약 해지

### 7.1 계약해지의 효과

가. SA가 자신의 SA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비활동 상태의 지속으로 계약해지 또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SA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러한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계약해지라 칭한다), 전(前)SA는 자신이 운영했던 마케팅 조직, 또는 그 조직에 의해 창출된 매출에서 기인한 여하의 수당 또는 보너스에 대해 아무런 권리, 지위, 주장을 요구할 수도 없다.

나. 사업계약이 해지된 SA는 SA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시크릿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 및 그 SA의 전(前) 하위사업자 영업조직의 매출과 다른 활동에서 창출된 장래의 수당, 보너스 또는 그 외 소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계약해지가 된 경우, SA는 자신의 전(前) 하위사업자 조직 그리고 자신의 전(前) 하위사업자 조직의 매출 및 그 외 활동에서 기인한 여하의 보너스, 수당 또는 그 외의 소득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다. 자신의 SA 계약이 해지된 후, 전(前) SA는 시크릿의 SA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시크릿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가 없어진다. SA계약이 해지된 SA는 계약해지 전 자신이 온전히 활동적이었던 마지막 수당지급기간에 대한 수당과 보너스만을 받게 된다.(프로모션처럼 별도 명시된 규정이 있을 시 제외), 계약이 해지된 SA는 시크릿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크릿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반환해야 하는 수당 및 채무가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7.2 비자발적 계약해지

시크릿의 고유권한으로 SA가 회원 활동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일정수준 이상(와우팩) 반품시에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 시크릿은 시크릿이 ①사업을 중단하거나 ②시크릿 법인을 해산하거나 ③ 직접판매방식을 통한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는 경우, 30일의 사전 고지를 통해 모든 SA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 7.3 자발적 계약해지

SA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에이전트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한은 소멸된다. 계약해지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02-2222-2900)를 통해 가능하다.

## SECTION 8 금지 행위

시크릿의 모든 SA는 전체 계약 내용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강력히 금지된다.

8.1 SA가 되고자 하는자에게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하거나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명목을 내세우는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를하거나 교육시키는 행위

8.2 SA등록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하위판매원

으로 등록하는 행위.

- 8.3 타 SA의 개인정보(회원등록증, 회원 등록신청서, 회원수첩, 마이오피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등)를 임의로 보관·변경·사용하는 행위
- 8.4 상품구매시 시크릿의 공식적인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의 송금을 유도(권유)하거나 대금결제수단을 임의로 대체 또는 변경하는 행위.
- 8.5 보상플랜의 취지나 목적, 조건 등에 반하여 과도한 상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재고를 보유하게 하고 심의받지 않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 8.6 본인과 하위판매원이 허위매출(후원수당 수령후 의도적 반품행위) 또는 대량반품 등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하여 시크릿에 피해를 주는 행위.
- 8.7 SA는 후원인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마케팅상에 명시된 후원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시크릿이 주장하는 일정직급 이상의 토론회, 행사, 기타 교육등에 시크릿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않고 후원수당만을 수령하는 행위.
- 8.8 타 SA가 구매한 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 또는 인수하거나 신규회원의 제품을 사용방법 설명, 전달식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개봉, 훼손하는 행위.
- 8.9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시크릿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 8.10 시크릿이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소핑몰, 프랜차이즈등)
- 8.11 시크릿사업과 관련하여 독점적 영업지역을 주장하거나 심의 받지 않은 시크릿 상표권을 사용한 간판, 판매보조물품, 인쇄물등을 제작하는 행위
- 8.12 수입 및 사업기회, 성장 가능성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보장이나 암시, 주장하는 행위
- 8.13 시크릿과 고용관계에 있다는 소개나 암시를 하거나 직권, 대표등의 표현을 구두로 하거나 명함등 인쇄물등에 사용하는 행위.
- 8.14 타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비방, 유언비어 유포등으로 시크릿 조직의 외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 8.15 SA가 동종업계 타사의 활동(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해당업체의 사업설명, 문자메세지, 구두로 이전을 권유 또

는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및 하위 판매원의 반품을 유도하는 행위등)을 하는 행위.

- 8.16 본인이 타활동라이너로 전환, 변경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나 기 등록된 SA를 자신 하위 사업자 또는 타라이너로 전환 및 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 8.17 SA 상호간의 부당한 요구, 금전거래 또는 폭언, 욕설, 폭행, 허위사실유포, 선동, 투서 등으로 사업분위기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
- 8.18 시크릿이 허락지 않은 단체를 개설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시크릿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근거없는 협박을 하는 행위.
- 8.19 시크릿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 대외기관에 민원을 야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8.20 시크릿의 영업상의 비밀과 다른 SA의 영업상의 비밀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 8.21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거나 언론사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크릿을 협박하는 행위.
- 8.22 시크릿의 민원처리 지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본인의 요구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SECTION 9 징계 규정

### 9.1 목적

이 규정은 시크릿 SA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하 방판법) 및 SA활동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2 징계위원회 설치

시크릿은 방판법/SA활동법규 위반자에 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 9.3 징계위원회 구성

- 가. 징계위원회는 시크릿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방판법 SA활동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준법부서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다. 징계위원회 구성원
  - 위원장 : 대표이사 또는 임명자
  - 위원 : 영업본부, 인포메이션 서비스 본부, 컴플라이언스 본부 본부장급 이상 각 1명
  - 간 사 : 준법부서 부장

## 9.4 징계위원회 회의

가. 징계위원회 회의는 준법부서에서 안전 회부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다. 준법부서에서는 해당 SA의 방관법/SA활동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 9.5 징계사유

SA가 방관법/SA활동법규를 위반시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피해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9.6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9.6 징계의 종류

가. 직권 해지

나. 자격 정지

다. 자격 제한

라. 경고

마. 기타 필요한 조치(승급취소 등)

## 9.7 진상조사 및 제재절차

가. 시크릿은 SA의 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SA의 위반 행위를 접수받으면 해당 SA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시크릿은 규정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명자료를 재차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 SA는 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해야 하고 주어진 시일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을 제출할 경우 시크릿은 해당 SA 자격에 대하여 규정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시크릿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한 SA에게 시크릿의 결정 사항을 서면(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으로 통보한다.

마. 규정을 위반한 SA가 시크릿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신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시크릿 준법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 시크릿은 1회에 한해 재심의할 수 있다.

바. SA의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반사항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시크릿은 해당 SA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즉각적으로 자격제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시크릿은 규정위반에 대한 최종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아. 방관법/SA활동법규를 위반한 SA를 발견한 SA는 방관법과 SA활동법규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상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위반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준법부서에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일정수준 이상의 반쯤이 접수되거나 허위매출에 의한 승급일 경우 시크릿의 재량에 의해 승급자의 승급을 취소하고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차. SA가 타사에 가입하거나 유인행위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 즉각적인 자격해지를 할 수 있다.

## 9.8 징계조치 및 효력

가. 직권해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SA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방관법/SA활동법규 중 1회 위반으로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심각한 피해를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SA가 방관법 및 SA활동법규를 위반하고 그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기간 이내에 정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③ 시크릿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시크릿 또는 SA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④ 시크릿 또는 SA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SA가 방관법/SA활동법규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계약기간중이라고 할지라도 SA의 비활동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계약의 효력은 종료될 수 있다.

⑦ SA 등록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직권해지의 효력

① 해지된 SA는 SA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② 자격이 해지된 SA의 후원자 지위는 시크릿의 규정에 따라 시크릿이 지정하는 다른 SA가 맡게 된다.

③ 시크릿이 SA의 자격을 해지한 경우, SA의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탈퇴한 경우 및 미강신 탈퇴 또는 승계자 없이 사망한 경우 등의 해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시크릿의 결정에 따른다.

나. 자격정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SA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방관법/SA활동법규 위반으로 인해 자격정지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후원수당이 발생되는 SA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전혀 SA활동 등을 하지 않으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경우

③ 중방된 사실과 함께 확인된 위반행위나 SA활동법규 위반자는 시크릿에 의해 언제든지 SA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자격정지 효력

① 자격이 정지된 SA에 대하여는 정지 기간 동안 마케팅 플랜에 준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② 시크릿은 자격이 정지된 SA에게 마케팅 플랜에 따른 자격인정을 하지 않는다

③ 자격이 정지된 SA는 시크릿의 공식행사에 초대 및 참석이 제한 될 수 있다.

④ 자격이 정지된 SA는 정지 기간 동안 시크릿 제품을 소개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SA를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SA로서의 어떠한 사업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자격이 정지된 SA는 시크릿과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포함하여 시크릿이 제공하는 어떠한 SA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 자격정지 기간의 종료

①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SA가 앞으로 더 이상 시크릿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본 SA활동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크릿은 자격정

지 조치를 풀고 제반 규정에 따라 SA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 ② 자격정지 기간 중 해당 SA가 재차 본 SA활동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크릿은 추가적인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SA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자격제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SA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방판법/SA활동법규 위반으로 인해 자격제한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 ② 9.7.바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 ③ 중방된 사실과 함께 보고된 위반행위나 SA활동법규 위반자는 시크릿에 의해 인제라도 SA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④ SA 자격제한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다.  
제품구매 정지 / 후원수당금지 정지 / 프로모션해제 정지 시크릿행사 참가 금지  
진행중인 자격요건 취득의 정지 / 마이오피스 이용 금지 / 오토십 해지  
ABC 출입 금지

· 자격제한 기간의 종료

- ①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SA가 앞으로 더 이상 시크릿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본 SA활동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크릿은 자격 제한 조치를 풀고 제반 규정에 따라 SA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 ② 자격제한 기간 중 해당 SA가 재차 본 SA활동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크릿은 다시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SA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경고

- ① 방판법/SA활동법규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SA에게 경고조치 할 수 있다.
- ② 경고조치를 받았을 경우 시크릿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 등의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경고조치로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이외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기타 필요한 조치

- ① 시크릿은 9.6에 명시한 적절한 제재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 ② 본 징계규정과 관련된 SA의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을 용납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 ③ 본 징계규정은 한국 내에서 시행중인 실정법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된다.
- ④ 징계와 관련하여 시크릿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근거없는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과 별도로 민, 형사상 책임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9.9 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징계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9.10 징계의결

가.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나.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 사실, SA활동, 공적,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한다.

9.11 의결보고 및 집행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한 후에는 준법부서에서 징계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위원장/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징계대상자를 징계 처분한 때에는 준법부서에서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문 또는 경고장을 본인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한다.  
다. 징계처분 해당자와 징계결과는 각 센터 및 온라인상에 공고할 수 있다.

9.12 시크릿은 본 전체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규정된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예외를 둘 수 있다. 전체계약상 시크릿이 갖는 권리 또는 특권은 시크릿의 독립 재량에 의하여 행사된다.

9.13 재심의

가. 징계조치를 받은 SA가 시크릿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신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시크릿 준법부서에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최소 2주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사항의 경우 시크릿의 고유권한으로 재심을 거부 할 수 있다.

SECTION 10

일반규정

10.1 시크릿은 본 회원 활동법규를 집행하고 규정을 위반한 SA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10.2 본 회원 활동법규와 관련된 SA의 위반 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위반 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을 용납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10.3 본 회원 활동법규와 관련된 모든 통지, 요구사항 및 기타 서류는 시크릿 본사로 우송한다. 시크릿이 SA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SA가 시크릿에 제출한 주소로 발송된다.

10.4 본 회원 활동법규는 한국 내에서 시행중인 실정법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되며 시



크리과 SA간의 분쟁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보상플랜

### 시크릿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

- 소매판매
-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 우대고객 보너스
- 퍼포먼스 보너스
- 팀 커미션
-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 1. 소매판매

에이전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에이전트 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액인 소매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2. 우대고객 보너스

우대고객 보너스는 본인이 추천한 우대고객의 볼륨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기준	계산방법	비고
1,000LV미만	우대고객 볼륨의 1/2×25%	-우대고객의 4주 합산 볼륨이 80CV 이상일 경우 계산됨
1,000LV이상~브론즈 미만	우대고객 볼륨의 1/2×50%	-우대고객보너스 계산후 사용 된 볼륨은 소멸됩니다.
브론즈 이상	우대고객 볼륨의 1/2×75%	

\* 우대고객은 사업 및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시크릿이 제공하는 각종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을 의미하며 구입하신 제품의 재판매 활동이나 후원활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 3. 팀 커미션

두 개의 레그 중, 소실적 볼륨의 500CV 배수의 실적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Active만 달성시	5% 지급
브론즈 지급 미만(Active & Qualified 달성)	10% 지급
브론즈 지급 이상(Active & Qualified 달성)	15% 지급

팀 커미션 매칭 수당은 1,000CV의 대상적 레그에 매칭되는 500CV의 소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바이너리 매칭 수당이 지급되면 해당 볼륨은 좌측 및 우측팀의 볼륨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매칭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볼륨은 다음 주부터 이월됩니다. 에이전트는 이 소득원 하나만으로도 주당 최대 \$25,000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1,000LV를 달성한 다음주부터 본인의 유지볼륨을 제외한 초과분은 본인의 소실적 그룹볼륨에 적용됩니다.

\* Active 미유지시 팀 커미션 계산을 위해 누적된 볼륨은 소멸됩니다.

### 4.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추천)

브론즈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는 자격이 되면 본인의 추천계보상 발생하는 하위 직급자의 팀커미션에 대하여 최대 20%까지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브론즈	로열	실버	골드	플래티넘	루비	다이아	블루 다이아	레드 다이아	크라운	크라운 로열
1세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세대			10%	10%	10%	10%	10%	10%	10%	10%	10%
3세대					10%	10%	10%	10%	10%	10%	10%
4세대							10%	10%	10%	10%	10%

### 5. 퍼포먼스 보너스

#### 5.1 승급 보너스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더욱 많은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승급보너스는 최고 1백만불까지 지급 가능합니다.(단, 직급을 달성한 1회만 지급됩니다.)

직급	총 승급수당	1차지급	2차지급	3차지급
브론즈	\$ 125	\$ 125		
로열	\$ 500	\$ 500		
실버	\$ 1,000	\$ 1,000		
골드	\$ 1,500	\$ 1,500		
플래티넘	\$ 4,000	\$ 2,000	\$ 2,000	
루비	\$ 5,000	\$ 2,500	\$ 2,500	
다이아몬드	\$ 8,000	\$ 4,000	\$ 4,000	
블루 다이아몬드	\$ 50,000	\$ 20,000	\$ 15,000	\$ 15,000
레드 다이아몬드	\$ 150,000	\$ 60,000	\$ 45,000	\$ 45,000
크라운	\$ 300,000	\$ 120,000	\$ 90,000	\$ 90,000
크라운 로열	\$ 1,000,000	\$ 400,000	\$ 300,000	\$ 300,000

2차/3차분의 지급시기는 조건 달성후 90일 경과후 지급

\* 각 지급조건을 달성한 주 이후 지급이 확정되는 해당주차까지 지속적으로 Active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분할 지급되는 승급보너스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 5.2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 보너스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 보너스는 본인이 최초 로열 에이전트 이상의 직급을 달성한 주부터 연속된 4주 기간 동안 로열 에이전트 이상의 직급을 유지할 경우 발생됩니다.

\*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 보너스는 4주 단위 사이클에 의해 계산됩니다.

직급	드라이브 유어 드림
로열	\$ 300
실버	\$ 600
골드	\$ 800
플래티넘	\$ 1,200
루비	\$ 1,400
다이아몬드	\$ 1,600
블루 다이아몬드	\$ 2,000
레드 다이아몬드	\$ 3,000
크라운	\$ 4,000
크라운 로열	\$ 6,000

## 6.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FSB)

와우팩을 구매하게 되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FSB) \$100가 발생하게 되며, 이 보너스는 추천인에게 지급됩니다. 본인등록 후 4주안에(등록주 미포함) 브론즈 직급 이상 승급 시 그 4주안에 본인이 추천한 모든 신규회원이 구매한 와우팩에 대하여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FSB)를 수령합니다.

단,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FSB)는 회원 한 명당 한 번만 발생합니다.

### \* 보너스 킵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출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발생된 수당의 합산 금액이 매출의 35%가 초과 될 경우, 35% 이내로의 조정을 위해 해당 주차의 수당을 받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수당 초과분만큼 동률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직급 체계

직급	LV	4주 합산 볼륨 좌/우	추천계보상 하위회원 유급 직급(좌/우)
브론즈		2,000 BV / 2,000 BV	
로열		5,000 BV / 5,000 BV	
실버		8,000 BV / 8,000 BV	브론즈/브론즈
골드		14,000 BV / 14,000 BV	로열/로열
플래티넘		20,000 BV / 20,000 BV	실버/실버
루비	1,000LV	40,000 BV / 40,000 BV	골드/골드
다이아몬드		80,000 BV / 80,000 BV	플래티넘/플래티넘
블루 다이아몬드		200,000 BV / 200,000 BV	루비/루비
레드 다이아몬드		400,000 BV / 400,000 BV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크라운		800,000 BV / 800,000 BV	블루 다이아몬드/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열		2,000,000 BV / 2,000,000 BV	레드 다이아몬드/레드 다이아몬드

볼륨은 연속된 4주간의 신규 합산 볼륨을 의미하며 직급을 승급/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활동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 Active (활동적)

에이전트가 지난 4주(현재 주 및 지난 3주)동안

- ① 오토십을 통한 구매 BV가 40BV이상인 경우
- ② (본인의 구매볼륨의 합) + (신규 직추천한 에이전트의 구매볼륨의 합) + (본인이 직추천한 우대고객 구매볼륨합의 50%)가 60BV이상일 경우

### ■ Qualified(요건충족)

본인이 활동적이며 본인 하위에 활동적인 직추천 에이전트를 좌우측 각각 1명씩 보유했을 때 요건충족이라고 합니다.

### ■ LV(Lifetime Volume, 평생누적볼륨)

신규 가입 후 해당 주까지 개인이 구매한 볼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마이오피스 > 트레이닝 > 교육영상 > 보상품권 교육영상 >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이전트 준수사항

시크릿 에이전트는 본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중 단단계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크릿다이렉트 코리아는 시크릿다이렉트가 제시한 방침 및 절차와 윤리 강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당사는 그 경중을 따져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가. 단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방관법 제 22조)

1. 단단계판매업자는 단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단단계판매자는 단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한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단계판매업자는 단단계판매원이 제 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단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4. 단단계판매업자는 언제든지 단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단단계판매업자는 단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단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원 수첩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교부우의 (방관법 제 16조)

1. 단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단단계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단단계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3)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5)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방법, 효력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7) 재화 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9)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10) 거래에 관한 약관
  - 11)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단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단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단단계판매업자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단단계판매원은 제품의 소매판매 이전에 방판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소매영수증에는 전송한 고지사항이 기재되어있다.

#### 다. 청약의 철회와 철회권 행사의 효과 (방판법 제 17조 및 제 18조)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단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 (방판법 제 23조제 24조)

##### 제23조(금지행위)

- ① 단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

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단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단단계판매원을 단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단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단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단단계판매조직 및 단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단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단단계판매업자는 단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幫助)하여서는 안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단단계판매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단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중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 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차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 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사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안된다.

### 마.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시크릿에이전트는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크릿다이렉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에이전트를 교육, 가입시키는 자발적인 행위를 후원이라 하며, 모집할 신규 에이전트의 숫자를 정하는등 후원에 관한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습니다.

##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본 해설자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입니다.

### 1. 다단계판매란?

- 1)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2)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

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 4)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해당 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업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 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2) 후원수당 산정,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을 강요한다.
-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 과대, 과장 광고 금지 안내

###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SA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과대 또는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월 또는 월등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것

### 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SA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또는 판촉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거짓·과장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18조).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의학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5)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MEMO



